# 「토지주택연구」윤리규정

2010. 07. 23 제정 2020. 01. 17 개정 2021. 05. 14 개정 2021. 07. 22 개정 2022. 07. 22 개정 2024. 01. 18 개정

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토지주택연구」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(이하'윤리위원회'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, 그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연구윤리규정 서약)

「토지주택연구」에 투고한 저자는 연구윤리규정(이하 '윤리규정'이라 한다)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# 제 3 조 (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 범위)

연구유리규정 위반행위는 다음의 연구부정행위와 명예침해 행위를 포함한다.

- 1. 연구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연구의 제안·수행 및 연구결과의 발표과정에서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저자표시·자료의 중복사용 등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가. '위조'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한다.
  - 나. '변조'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·과정·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다. '표절'이라 함은 원저자의 아이디어·논리·고유한 용어·데이터·연구과정·분석체계·연구 결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와 출처를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말한다.
  - 라. '부당한 저자 표시'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 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중복 게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.
  - 가.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,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계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「토지주택연구」에 투고, 게재할 수 없다.

- 나.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·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「토지주택연구」에 투고, 게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드시 그 수정·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다.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· 보완하여 「토지주택연구」에 투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.
- 라.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·보완하여 「토지주택연구」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.
- 3. 「토지주택연구」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,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·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,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.
- 4.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- 5.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- 6. 투고자는 이해상충, 특수관계인 정보제공, 생명윤리, 젠더혁신정책 등 윤리준수 사항을 준수하고, 편집위원회와 논문심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 4 조 (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판정 및 벌칙)

- 1. 연구유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, 편집위원장은 검증조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- 가. 편집위원장은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.
  - 나.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선임하여 검증절차를 진행한다.
  - 다.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판정결과와 사유를 당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  - 라.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윤리위원장은 재판정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위원 회와 제보자, 피조사자의 진술을 듣는다.
- 2.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.
  - 가. 편집위원장은 홈페이지와 토지주택연구에 연구유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공시한다.
  - 나. 당해 투고논문은 게재 취소되며,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토지주택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 한다.
  - 다. 당해 투고자는 향후 3년 동안 토지주택연구에 투고하는 것을 금지한다.

#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

### 제 5 조 (구성)

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- 1. 제보 등으로 연구윤리위반의 의심이 드는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2. 윤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.
- 3.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4.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.
- 5.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편집간사가 겸하며,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
#### 제 6 조 (기능)

위원회는 「토지주택연구」의 연구유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.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과한 사항
- 2.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# 제 7 조 (심의 및 의결)

- 1.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- 3. 연구윤리규정위반 심사대상자에게는 결정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4.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5.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6.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## 제 8 조 (위원회 및 위원의 준수사항)

- 1. 위원회 및 위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.
- 2. 위원회 및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 9 조 (비밀유지의 의미 등)

- 1.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2.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,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- 3.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·의결 등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.

# 제 10 조 (경비)

LHRI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#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